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

1. 검역 일반

- '14년 1월 30일, 식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운송과정 규제 강화를 위한 신규 규정 발표
 - 미FDA는 식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화주, 수송업체, 수취인 등이 이용하는 운송차량 (차량, 기차 등)을 통해 운반되는 식품(동물용 음식 포함)의 위생·안전 요건을 강화하기로 함
 - 제안된 규정은 2005년 발표된 식품위생운송법(Sanitary Food Transportation)을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중인 식품안전현대화법에 포함됨
 - 실제로 드물지만 식품의 생산과 가공과정이 아닌 운송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주목적임
 - 규정에서 밝힌 내용에 살펴보면
 - i) 차량 및 운송 장비: 운송하는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운송차량 및 설계, 그리고 유지보수
 - ii) 운송과정: 식품별 적정 온도 조절 및 식품과 비식품의 적절한 분리와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
 - iii) 정보교환: 상황에 맞춰 이전되는 화물, 운송차량의 청소, 그리고 온도 조절 등의 정보를 화주, 수송업체, 수취인 간에 원활한 정보교환 필요
 - iv) 교육 및 기록: 위생적 운송의 지속성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 및 서면 절차 기록 보관
- 향후 진행 사항
 - 현재 FDA는 해당 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최종 법안을 도출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의견제출 기한은 14년 3월 31일까지임
 - *공청회 일정: Feb. 27, 2014 in Chicago; March 13, 2014 in Anaheim, Calif.
March 20, 2014 in College Park, Md.

2. 관련 웹사이트

Federal Register 게재 내용:

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:

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articles/2014/02/05/2014-02188/sanitary-transportation-of-human-and-animal-food>

II

품목별 통관, 검역, 라벨링

1. 쌀 종류 별 통관 일반

- 적미(Red Rice)
 - (i) 유해잡초성(Noxious weed) 적미
 - *Oryza longistaminata*, *Oryza punctata*, *Oryza rufipogon*
 - (ii) 무해잡초성(Non-noxious weed) 적미
 - *Oryza sativa*
- 흑미(Black Rice)
 - *Oryza sativa*
- 일반미(Common Rice)
 - *Oryza sativa*

2. 쌀 HTS 코드 및 관세

- 현미(Husked Rice)
 - HTS 1006.20.4060 - 1kg당 2.1cents
- 반도정(Semi-milled) 혹은 백미(Wholly milled rice)
 - HTS 1006.30.9075 - 1kg당 1.4cents

3. 쌀 검역주체별 요구사항

- 농산물검역계획(AQI)/관세청(CBP)
 - 유해잡초성 적미의 경우 쌀눈이 발견되는 경우 통관이 금지됨
 - 그 이외에 반도정 혹은 백미는 검사 후 통관이 가능한데 쌀눈 있는 쌀이 쿼트(샘플 당 28개 이하여야 함
 - 한국산의 경우는 식물 위생 증명서(phytosanitary certificate)가 필요하지 않음

4. FDA 요구사항

○ 비소 검출 레벨 측정 관련

-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검역과정에서는 비소 검출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사과 주스 혹은 병음료 등의 경우에만 검사하고 있음
- AQI/CBP의 검역조건에만 맞춘다면 대미 쌀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음

III

통관 컨설팅 Q&A

○ 1월 통관 Q&A (2건)

Q: 콜라겐 대미 수출시 VS 수입허가증 및 동물검역증을 제출해야합니까?

A: 콜라겐에는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AQI/CBP가 VS-Import Permit(수입 허가증)과 Animal Health Certificate(동물검역증)을 요구합니다.

Q: 올해 2014년 참치캔(오일포함)의 대미수출시 한미 FTA 특혜관세는 어떻게 됩니까?

A: 2014년 대미수출시 참치캔(오일포함)의 한미 FTA 특혜관세는 29%입니다. 2013년 참치캔의 대미수출 관세는 35%였으며 2012년부터 15년간 균등철폐 후에 무관세로 전환됩니다.

2014년 1월 미국 뉴욕 통관보류사례 세부내역 (중 9건)

발생 일자	품목	기관	기관 조치 사항	사후 처리 사항	결과
1-2-14	새우과자	AQI/CBP	동물성 성분 확인을 위한 성분표 요청	우유성분 포함으로 인한 응급조치통보(Emergency Action Notification)	폐기
1-6-14	냉동 가공굴	FDA	어패류 위생프로그램(NSSP)미국 패류선적자 리스트(ICSSL) 요청	어패류 위생프로그램(NSSP) 미국 패류선적자 리스트(ICSSL) 제출	보류 해제
1-8-14	샐러드 드레싱	AQI/CBP	우유 및 계란 성분 함유 가능성으로 인한 허가증 요청	VS 허가증 & 동물검역증 제출	보류 해제
1-9-14	포도 음료	FDA	공장등록번호(FCE) & 공정과정등록번호(SID) 요청 (저산성, 산성화 식품)	공정과정등록번호(SID) 불일치	통관 보류
1-10-14	녹차 믹스	AQI/CBP	유장(Whey) 성분의 VS 허가증 & 동물검역증 요청	유장(Whey) 성분의 VS 허가증 & 동물검역증 제출	보류 해제
1-22-14	과자	AQI/CBP	동물성 성분 확인을 위한 성분표 요청	성분표 확인을 통한 동물성 성분 불포함 확인	보류 해제
1-23-14	냉동명란젓	FDA	살모넬라 감염 가능성으로 인한 샘플링 요구	FDA인증랩을 통한 검사 실시	통관 보류
1-23-14	흑미	FDA	잔류농약 검출 가능성으로 인한 샘플링 요구	FDA 인증랩을 통한 검사 실시	보류 해제
1-27-14	두부	CBP	성분표 및 제조과정 증빙 서류 요청	성분표 및 제조과정 증빙 서류 제출 (hts 코드 변경: 2008.90.9090)	보류 해제